

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(의안번호 제619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3. 21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3. 21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0. 3. 30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현행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상위법령 및 규정과 불일치한 것을 바로잡고 공립 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신규임용 연령 및 임기제한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종사자의 신규임용 및 임기제한 규정을 폐지함.(안 제12조의 3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의 3 중 시설장(종사자)의 임기 및 신규임용 연령이 동 조례 제12조의 2 및 제8조와의 내용이 중복되어 형평성이 없어 시설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제한규정을 삭제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안 제12조의 2 및 안 제8조의 내용과 상치되는 부분은 무엇인지
- 답 : 근무상환 연령과 위탁운영기간 등의 내용임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0. 3. 30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